

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14. 4.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97호로 2014년 4월 8일 정선희 의원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독서를 통한 창의문화 구정 구현과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민의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독서문화 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안 제4조)
  - 독서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 문화 풍토를 조성
  -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독서의 달 운영 등 (안 제6조)

- 구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
-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수여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교육지원과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독서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독서환경의 조성 및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 독서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함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독서관련 민간 단체 또는 동아리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비 지원, 각종 사업추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독서의 달 운영, 표창 수여, 관계 기관협력,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 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시가 분석한 ‘2013년 독서실태 및 공공도서관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의 연간 독서량은 11.96권으로, 지난 2008년 보다 7.52권이 감소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6개 시도에서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서울 시민의 독서량이 전국 평균(9.2권)보다

근소하게 많지만, ‘도서관 천국’인 서울에서 책 읽는 시민이 계속 줄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음.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독서관련 행사의 개최, 독서의 달 운영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참 고 자 료

## 1 독서문화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독서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